

제 호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(단체)명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성명(대표자):
4. 주소:
5. 사무소 소재지: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